

Brunswick주에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HST의 과세대상이 된다.

<예 4-3>

HST 미시행 지역에 있는 자동차 리스 회사가 월별 임차료를 받는 조건으로 HST 시행지역의 거주자에게 24개월간 리스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차료는 HST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리스 기간 중 리스를 받은 자가 HST 미시행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용역세 7%가 과세된다.

나) 판매용 이외의 유형동산의 공급

① 임대(rentals)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유형고정재산의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지의 원칙에 따라 임대 물건의 사용지가 HST 시행지역인 경우에는 HST가 과세된다.

<예 4-4>

어떤 사람이 Nova Scotia(시행 주)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7일간 임차하여 다른 주로 여행을 간다면 Nova Scotia주는 공급지가 되며 HST의 과세권을 갖는다.

② 리스(leases)

위에서 말한 임대해당되지 않는 임대는 리스(리스 기간이 3월 초과)에 해당되며 리스는 일련의 각 기간별로 독립된 공급(a series of separate supplies for each period)으로 본다. 따라서 이 일련 공급기간별초를 기준으로 주로 사용하는 장소(ordinary location)가 속하는 주에서 과세권을 갖는다.

<예 4-5>

New Brunswick(시행 주)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판매인이 노트북 pc를 2년 기간으로 리스하여 그 주의 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New Brunswick주를 공급지로 본다. 따라서 동주가 과세권을 갖는다.

③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 공급

㉞ 부동산의 공급(supplies of real property)

부동산의 소재지가 HST 시행지역이면 그 지역에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Labrador(시행 지역) 주에서 소재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HST의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공급지(소재지)가 HST 미시행 지역이면 재화용역세의 세율 7%가 적용된다.

㉟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공급(supplies of services in relation to real property)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도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된다. 위의 부동산의 경우 Labrador주가 납세지가 된다.

미시행 지역의 공급지가 되면 재화용역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무형동산의 공급

일반적으로 무형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다음과 관련되는 것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캐나다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